경기도 공고 제2023 - 5373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9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㈜위드림씨앤디 (박성찬)	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14, 2층 2002호 (민락동, 민락송학 글래드스톤앤그레이스 모나코)	건축공사업 (01-4667)	영업정지 5개월 ('23.4.1.~ '23.8.31.)	**건설업 등록기준 미달** (기술능력)	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의 제3호